

# 공정위 소식

## ▣ 새해에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계속”

### 정호열 공정위원장 신년사에서 강조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2010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에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작년에 처리한 LPG 가격담합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건으로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첨단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3년의 기간 동안 끈질긴 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재한 것은 위원회 법집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래거”라고 지적하면서, 작년 공정위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에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민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제재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자상거래법은 △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 △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변경 △ 신원정보 고지의무 등이 적용되는 선자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 확대 △ 소비자에 관한 정보 도용시 관련 사업자에게 협력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축소 △ 통신판매업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 계약서면 교부대상 추가 및 원산지 표시의무 추가 △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등을 강화했다.

그리고 △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금지 △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 회복에의 협력사항 △ 통신판매업자의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 일원화 △ 시정조치 내용 추가 △ 과징금 조문 정비 및 양벌규정 개선 등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 △ 통신판매업 신고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군·구에게 이양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2010년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공정위 내년 사업계획은 '경제체질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 경쟁촉진,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역량 강화에도 중점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오전 8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는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이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모니터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2010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서민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하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주요 법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창업자 유인행위 방지 및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을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에 있어서는 최근 외국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여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확산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 질서를 준수해 나가도록 경쟁관련 '연성규범(Soft Law)'을 개발할 필요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공기업 등 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 이행 평가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녹색소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의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녹색기술 개발 외에 수요측면의 녹색소비도 중요함을 인식해, 올바른 녹색소비를 위해 녹색상품 광고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통과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됐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수급사업자가 도급금액 증액 사실을 알지 못해 하도급 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반복적 법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거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조사방해·거부 시에는 법인 2억 원 및 개인 5천만 원의 과태료를, 허위자료 제출 등에는 법인 1억 원 및 개인 1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됐다.

## ▣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국제카르텔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 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가격과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 세계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국내업체들 간에 가격이나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무혐의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이외의 주요국가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사건은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고, 외국도 공정위와 유사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인지조사를 개시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한국 2개, 미국 1개, 일본 1개 등 국내외 4개 플래시메모리 업체였다. 법위반 혐의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이어서, 중점조사대상은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와 국내시장에도 가격·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었다.

## ▣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 소비자편익 저해 법령 개선 등 한차원 높은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으로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즉,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게 된다. 총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 과제별로 올해 중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2개 과제는 2011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2010년에는 상품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도입,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추정 제도 도입 등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법령에서 사적구제 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내년에는 소비자 안전의 강화, 소비자 시각에 입각한 정책 수립·집행, 책임 있는 소비활동 진작, 정보 제공 구축기반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 ▣ BHPB와 Rio Tinto간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 Billiton과 Rio Tinto는 호주 서부지역의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EU·호주 경쟁당국에 이어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서에 따르면, 조인트벤처는 양사 소유의 모든 광산에서 철광석 생산(Production)을 전담하되 판매(Marketing)는 양 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어, BHPB-Rio Tinto 측은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되어 경쟁제한성이 없고 시너지효과로 소비자 이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 간의 기업결합으로 직접적 수요자인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업계 등 그 후방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세계 해상운송 철광석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Vale(브라질) 35.2%, Rio Tinto 22.5%, BHPB 14.8% 순이다(2008년 기준). 양 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37.3%에 이르는데, 한국 철강업계의 경우 약 65%의 철광석을 양 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인트벤처 설립의 경쟁제한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소식

## ■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 공시의무 위반 29개사에 총 1억 8,000여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의거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정기 및 수시공시의무가 있으며, 공정위 지난 7월부터 1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총 14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 〈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현황 〉

(단위 : 만원, 건수)

기업집단명	과태료	경고	기업집단명	과태료	경고
대림	0	1	지엠대우	0	1
대우조선해양	500	0	코오롱	2,000	2
대한전선	4,645	4	한국가스공사	255	3
동국제강	0	3	한국철도공사	1,525	2
동부	0	4	한진	1,087	1
동양	500	1	한화	145	0
씨제이	1,670	3	현대백화점	0	1
에스티엑스	1,000	1	현대자동차	1,500	2
엘에스	500	2	효성	1,680	5
지에스	1,000	0	합계	18,007	36

\* 기업집단명은 가나다순임

공시위반내역을 보면 19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비상장회사가 7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28건, 미공시 27건, 누락공시 18건, 허위공시 2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종류별로 보면 정기공시(매년 4월 7일까지) 위반이 23건(30.7%)이고 나머지는 수시공시와 관련해 52건(69.3%)을 위반했다.

정기공시의 경우는 대부분 공시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2007년 10월 도입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위반사례도 나타났다. 수시공시의 경우는 임원 변동, 최대주주 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공시 위반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한 기업집단은 대한전선(12건), 효성(10건), 씨제이(8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29개사 39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 8,0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23개사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반회사비율이 2007년 43.1%, 2008년 41.5%, 2009년 30.7%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0% 이상업체에서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비상장사들의 경우 공시담당인력의 부족과 계열 신규 편입에 따른 제도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위반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는 1.74건으로 2008년 1.72건과 유사했다.

지난 7월 도입한 비상장공시제도를 통합한 기업집단현황공시는 내년 중 기업집단현황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며, 통합 공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에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제도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제상 이익을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에 투입한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의 지원 허용기한(3년)을 삭제해 항구적인 지원을 허용하고, 종소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한정했던 지원행위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 면제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제한 소지가 크지 않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공정위 소식

## □ 상생협약평가 결과, 20개 대기업이 1조1천억 협력사 지원효과

### 현대·기아차 '최우수' 등급, SKC&C, 삼성전기 등 7개사는 '우수'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현대차그룹 10개, SK그룹 9개, 삼성전기 등 20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현대차·기아차에 대해 '최우수' 등급을, 삼성전기·SKC·SKC&C·현대모비스 등 7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 이행실적 평가결과 〉

평가등급 (기준 점수)	기업명 (가나다, 영문순)
최우수 (95점 이상)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우 수 (90점 이상)	다이모스,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SK네트워克斯, SKC, SKC&C
양 호 (85점 이상)	아이야, SK에너지, SK케미칼

공정위는 평가 결과, 매우 유용한 신유형의 상생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2차 협력사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보증프로그램 운용 및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현금, 납품단가 조정 등의 내용이 2차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에 대해 공문, 회의,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단기조정실적 3,008억 원 등).

SK그룹 13개 계열사는 인턴사원을 채용해 중소 협력사에게 무상(SK가 인건비 부담)으로 파견, 협력사의 구인난 및 대학졸업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인턴 250명, 협력사 225개사, 비용 46억 원).

또한, 평가대상 기업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90~100%로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20개사 중 16개사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6개사와 SKC, SKC&C 등 SK그룹의 7개사 및 삼성전기 등 총 13개사가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은 전체 1,400개 협력사에 대해 총 5,7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현대·기아차, SK에너지 및 삼성전기 등 18개사가 1,223개 협력사에 대해 총 4,924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번 평가대상 20개 대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1조 1,066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금번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급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비록 '양호 등급(85점)' 이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정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100%, 5개사),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151억), 교육·훈련지원 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호' 등급 이상에 이르지 못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재협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대기업의 명단은 대기업 및 관련 사업자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 ■ 제약시장의 표준적인 공정경쟁규약 마련

### 제약사는 협회 지정처에 기부해야…학술대회 참가지원도 협회 통해 성사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규약이 공정위 심결례, 보건의료시장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약의 규범력·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제약협회는 근래 공정위의 제약사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공정경쟁규약의 규범력·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규약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운용기준은 금품류 제공 행위별 금액한도 등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협회가 자체 규약심의기구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규약은 현행 규약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먼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즉, 규약은 의약품 정보 수집·전달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규약이 허용한 금품류 제공 행위별로 행위원칙을 구체화해 규약 범위내 정당한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금품류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여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협회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특히 '세부운용기준' 개정시 외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 규약 하위규정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회의 개정 규약을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는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즉, 제품 설명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거나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동일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 금품류 제공 행위의 원칙 위반은 부당 고객 유인으로 추정하고, 협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제품설명회, 지정 기부 등 부당고객유인 가능성 차단을 위한 협회에의 신고·심의 등 절차적 의무 위반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협회가 자율 규제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재차 조치하는 것을 지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규약 하위규정 개정, 신고서 양식 작성, 규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개정 규약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에 따라 금번 개정 규약의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로 했으며, 개정 규약의 시행에 앞서 규약 개정 취지가 반영된 실효적인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마련을 위해 협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 □ 공정위, 가스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에 단계적 경쟁 도입·확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가스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스산업(천연가스)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그동안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 독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부문 지역독점 등 독점구조가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는 환경 친화적 특성,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14.4%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도 산업의 빌전과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스산업은 안정적 수급 및 가격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많고 저장 시설 및 배관망 등 초기설비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가스산업의 시장구조는 도입·도매, 소매부문으로 구분되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소매부문은 32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스산업의 독점구조로 인해 가스사업자간 경쟁은 없지만 집단에너지 등 타 열원과의 경쟁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매출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가스산업에 있어서 도입·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도입계약 체결 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도매부문의 신규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요금 중 원료비의 비중이 83% 수준으로 요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도입·도매 독점에 따라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아, 도입계약 체결 시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부문 역시 사업자간 공급권역의 중복을 금지하는 허가제로 인해 권역별로 1개의 사업자만 존재하는 지역독점구조가 지속되어 경쟁이 차단되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배관망 공동이용(Open Access) 등을 통해 소매시장에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격 규제에 있어서는 가스산업의 독점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가격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최종결정하는 승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가격기능의 작동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에 맞추어 가격경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전부개정(안)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시대상 거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시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위반(50%)이나 5회 이상 상습위반(6회 첫분부터 회당 10%)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기타 과태료 계산 방법·순서 등을 명료하게 전면 개선했다.

또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추가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행위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초점을 둀기 때문에 기업들의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 간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더불어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신설을 통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LG 통신3사 합병, 조건 없이 승인

### 한전에 통신사들간 전주의 차별적 이용조건 개선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은 외형상 동일한 통신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수평형 결합),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거나(수직형 결합),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을 영위(혼합형 결합)하고 있는 회사들 간의 결합으로, 각각의 결합형태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 당사회사들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모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관계로서 같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음 △ 결합상품 판매, 동일 서비스 재판매, 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관계임 △ 당사회사는 후발통신사업자로서 대부분의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 △ 당사회사들은 이미 설비, 영업망 등의 사업능력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 종합적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주요 경쟁사들(SK로, KT) 보다 영업능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 경쟁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이번 합병과의 관련성이 낮아 쟁점별로 주장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을은 대부분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만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회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합병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검토한 쟁점들 중에서 '한전 전주 조가선 사용에 대한 차별' 문제는 통신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LG합병법인 이외의 통신회사들도 전주 상단조가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합병심사와 관련해 통신회사들 간의 차별적인 한전전주 조가선 사용조건이 개선될 경우는 현재 하단조가선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사 및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합병법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 공정위, LPG 판매가격 담합에 엄중 제재

### 6년에 걸친 LPG 공급사의 프로판, 부탄가격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PG 공급회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 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가격결정업무 담당자 간의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 폭에 관하여 협의한 후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 왔는데, 7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가격결정 결과 양 시간 평균격차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kg당 0.01원이었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가격(51회)은 양 회사 간의 격차가 월평균으로 0.2 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가격은 1회를 제외하고는 양사가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

E1과 SK가스는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했고,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 통보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 차이는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결국 수입 2사와 정유 4사는 가격자유화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신들 간의 LPG 거래를 LPG 공급사 간의 공동의 가격결정을 형성·유지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LPG 공급사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 유지, 경쟁 자체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LPG 공급사들에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를 적용,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했다.

#### 〈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 억원)

업체명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액	1,894	1,987	1,602	558	385	263



## 공정위 소식

한편, E1과 SK가스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공정위는 LPG 공급회사들의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회의제도’ 도입 등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비자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피해구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소비자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 도입 △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 현행 대표 당사자 선임절차 및 권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하도록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 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 명확화 △ 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2009년 11, 1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09년 12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157개로 지난달 1,155개에 비해 편입 11개, 제외 9개 등의 변화로 2개 회사가 증가했다.

〈 2009년 11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09. 11. 2.	편 입				제 외						증감	2009. 12.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자정 제외	기타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46개)	1,155	8	3	-	11	2	3	2	-	1	1	9	2	1,157

편입내역으로는 10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으로 총 11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이 8개 [SK : 에스케이신텐(주), 포스코 : (주)포스화인, GS : 지에스피엘에스(주), 금호아시아나 : 금호렌터카(주), CJ : 동부산태마파크(주) 등]였으며 △ 지분 취득 건수는 [SK : 포항맑은물(주), LG : 다이아몬드샘물(주), 대우조선해양 : 비아이디씨(주)] 3개였다. 제외내역으로는 7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 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9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 합병 2개[CJ : 씨제이티브이엔(주), 코오롱 : 코오롱패션(주)] △ 지분 매각 3개[금호아시아나 : 금호오토리스(주), 대한전선 : 한국렌탈(주) 등] △ 청산 종결 2개[금호아시아나 : 대한통운터미널(주), 동부 : 솔렉스세미콘더터(주)] △ 지정 제외 1개[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1개 [지에스 : (주)에프엔뉴하우징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였다.

2010년 1월 4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156개로 지난달 1,157개에 비해 편입 17개, 제외 18개를 포함 1개 회사가 감소했다.

〈 2009년 12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09. 12. 1.	편 입				제 외						증감	2010. 1. 4.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자정 제외	기타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46개)	1,157	11	4	2	17	7	1	3	-	-	7	18	△1	1,156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으로 총 17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11개 [롯데 : (주)기린식품, 한진 : (주)한진해운, 한화 : (주)한화도시개발, LS : (주)평택농기온 등]이며 △ 지분 취득 4개 [삼성, 현대건설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등] △ 기타 2개 [KT : (주)케이티씨에스, (주)케이티스]였다. 제외내역으로는 10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 합병, 청산 종결 등으로 총 18개 소속회사가 감소됐다. △ 흡수 합병 7개 [두산 : 삼화자산(주), 한화 : 한화개발(주), 효성 : 갤럭시아카뮤니케이션즈(주), 코오롱 : (주)케이티스 등] △ 지분 매각 1개 [SK : (주)이투스] △ 청산 종결 3개 [OCI : 동양실리콘(주), 동국제강 : 부산 항사부두운영(주) 등] △ 기타 7개 [SK : 포항맑은물(주), 대한전선 : (주)베리아이비홀딩스 등]이었다.

# 공정위 소식

## □ 공정위 인사 동향

2009. 10. 23.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2009.10.23.~2010.10.17.)

11. 4.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  
사무관 오석정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행정사무  
관 황태호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  
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사무관 권순국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사무관 구성림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행정사무관 박정웅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오동욱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총성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행정주사  
서문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11. 7.

- ◎ 김태훈  
전산주사보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근무  
를 명함.
- ◎ 안영철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09.11.7.~별도발령시까지)
- ◎ 한대호  
행정주사보에 임함.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 ◎ 윤희준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  
자과 근무를 명함.

◎ 장재혁

시설주사보에 임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11. 11.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사무관 왕일상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지원근무 연장을 명함.  
(기간: 2009.11.12.~별도발령시까지)
-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행정사무관 정재득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기간: 2009.11.11.~2010.11.10.)
- ◎ 공정거래위원회 토목사무관 지윤구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11. 23.

- 정부인사발령통지
-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유재운(劉載雲)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12. 4.

- ◎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12. 7.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사무관 왕일상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12. 8.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종선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에 보함.

12. 9.

- ◎ 부위원장실 행정사무관 강영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주사 조의제  
부위원장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2009.12.9.~별도발령  
시까지)

## 12. 10.

-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주사 현종환  
문화재청 전출을 명함.
- ◎ 문화재청 행정주사 정래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12. 13.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유성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의거 휴직을 명함.(기간:2009.12.13.~2010.5.12.)

## 12. 14.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이정만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이동규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윤혜원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석태웅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이정희
- ◎ 7급(행정)채용후보자 강해진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이관형
- ◎ 7급(행정)채용후보자 김운영
- ◎ 7급(행정)채용후보자 손민경
- ◎ 7급(행정)채용후보자 김현주
- ◎ 7급(전산)채용후보자 박영민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운영지원과:2009.12.14.~별도 발령시까지)

## 12. 15.

- ◎ 위원장실 기능8급(사무원) 이해진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위원장실 기능10급(사무원) 이은주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위원장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09.12.15.~별도발령시까지)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김형순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상임위원실(2) 기능8급(사무원) 조정빈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이성조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장정희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원) 박경선

상임위원실(1)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김은정

상임위원실(2)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유현정

상임위원실(3)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박명숙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비서실)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김영임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상임위원실(1) 기능8급(사무원) 이상남

운영지원과(서무) 근무를 명함.

## ◎ 상임위원실(3) 기능8급(사무원) 윤은숙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별도발령시까지)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이해숙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기능8급(사무원) 장금란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기능8급(사무원) 김민정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조경희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이소정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조순옥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윤현숙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원) 한수자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성복용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비서실) 근무를 명함.

# 공정위 소식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기능 8급(사무원) 조경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비서실)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신자경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종괄과(비서실) 근무를 명함. 종합상담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추미라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비서실) 근무를 명함. 종합상담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원) 최정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노현숙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원) 윤여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종합상담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09.12.15.~2010.2.12.)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기능8급(사무원) 오은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정재용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09.12.15.~별도발령시까지)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원) 나애순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원) 김미영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원) 강귀자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박명희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12. 17.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권철현  
파견복귀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에 보함.

## 12. 18.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이수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시보) 강귀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09.12.18.~별도발령시까지)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김현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09.12.18.~별도발령시까지)

## 12. 21.

-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주사 박정용  
심판관리관실 소비자심판거래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이정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전산직 시보임용전수습원 박영민  
기획조정관실 정보회담당관실(실무수습) 근무를 명함.  
(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이동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  
(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김현주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  
(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이관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석태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09.12.21.~별도발령시까지)

## 12. 22.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보(시보) 안영철  
행정주사보에 임함.

## 12. 23.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황상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주사 임형윤

국토해양부 전출을 명함.

④ 국토해양부 행정주사 전일구

공정거래위원회 전임을 명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노경완  
대구광역시 전출을 명함.

⑥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주사 박종일

행정주사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전임을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⑦ 보건복지기획부 행정사무관 김건훈

공정거래위원회 전임을 명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12. 28.

①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시보임용전수습원  
강혜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09.12.28.~별도발령시까지)

②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서기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③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서기보(시보) 이은주  
위원장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④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원) 정재용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육성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육아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휴직기간:2010.1.1~2010.5.30.)

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의래  
2009년도 KDI 국내외연계과정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미국, Duke University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2010.1.3.~2010.12.31.)

⑦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남상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⑧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장상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송병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12. 29.

⑩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서기관 심주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휴직기간:2010.1.1~2010.6.30.)

12. 31.

⑪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김근성

2010년도 KDI 국내외 연계과정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KDI 국제정책대학원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2010.1.4~2011.1.3.)

2010. 1. 1.

⑫ 공정거래위원회 기능8급(사무원) 이영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 연장  
을 명함.(기간:2010.1.1~2010.5.31.)

1. 4.

⑬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행정직시보임용전수습원 윤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10.1.4.~별도발령시까지)

⑭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행정직시보임용전수습원 김은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10.1.4.~별도발령시까지)

⑮ 운영지원과(실무수습) 7급행정직시보임용전수습원 손민경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실무수습) 근무를  
명함.(기간:2010.1.4.~별도발령시까지)

⑯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사무관 박홍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의거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신재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⑱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운전원) 정상충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명함.

⑲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원) 손기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1. 6.

⑳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행정사무관 박종배  
서기관에 임함.